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년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5조제2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면회의 원칙(서면회의 예외) 규정으로 수정
-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수정
(협의요청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u> <u>운영조례</u></p> <p>제5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p> <p><신 설> <신 설></p> <p><신 설></p> <p>③ (생략)</p> <p>제7조(검토의견 제출) <u>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u></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u> <u>운영 조례</u></p> <p>제5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검토의견 제출) <u>위원회의 위원은 <u>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u>-----</u> -----</p>

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
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현지조사) ① -----사
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 자	안전건설과 장 근 용
연 락 처	(033)330-2406

관계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약(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 ④ 생략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생략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